[별지 제3호서식]

'20년 제2차(정기·임시) 노사협의회 회의록

회 의 일 시	'20.6.23(화) 17:00 ~
회 의 장 소	5층 항만위원회실
협 의 사 항	
보 고 사 항	
의 결 사 항	**□ 안건명 : 사옥 이전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등 후생복지 시설 확보** ○직원 복지시설의 확충 등 편의시설 완비와 관련하여 헬스장, 탁구장, 남녀휴게실은 현 정석빌딩 대비 면적을 확장하고, 동호회실 등 직원복지시설을 신규 설치를 하여 사옥 이전에 따른 복지시설을 쾌적하고 다양하게 갖추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한다. **□ 안건명 : 단체협약서 개정** ○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에 대한 현행화 필요한바 현 단체협약서를 개정토록 한다. - 「근로기준법」 제70조에 의거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야간근로(22:00 ~ 익일 06:00까지)와 휴일근로의 제한 대상자 확대* * (기존) 여성직원, 임신 중인 직원 → (개정) 18세 미만 직원 포함 -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3에 의거 난임치료휴가(3일 이내, 최초 1일 유급) 부여 -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2에 의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방법 유연화 -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2에 의거 가족돌봄휴가(최장 10일) 사용대상 및 방법 명문화
의결된사항및 그이행에관한 사 항	
기타참고사항, 전분기의결된 사항이행상황	

(뒷 쪽)

참석위원 서명

사 용 자 위 원		서 명	근 로 자 위 원		서 명
사 장	최 준 욱		노동조합 위원장	이 민 호	
경영부문 부 사 장	홍 경 선		노동조합 부위원장	현 종 길	
운영부문 부 사 장	이 정 행		노동조합 부위원장	장 영 희	
건설부문 부 사 장	신 용 범		노동조합 조직부장	박 정 서	
기획조정 실 장	김 종 길		노동조합 회계감사	김 지 아	